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영전자㈜의 임원 및 직원이 윤리의식 및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 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"이해관계자"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영향을 받는 모든 자연인, 법인, 기타 단체를 말한다.
- 2."선물"이라 함은 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, 숙박권, 회원권, 입장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.
- 3."향응"이라 함은 음식물,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,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등

제3조(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등)

- ①임직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당해 상급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제 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직원 행동규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자와 (이하"윤리규정책임자"라 한다) 상담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을 받은 윤리규정책임자는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의 취소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의 취소,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해관계 직무의 회피)

-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윤리규정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윤리규정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지 아니할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대표이사는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(특혜의 배제)

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, 혈연,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.

제6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)

①임직원은 여비,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정치적 중립)

- ①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회사는 임직원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.
- ②임직원은 회사 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회사의 자금, 인력,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인사청탁 등의 금지)

- ①임직원은 자신의 승급, 전보 등 인사에 관해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급,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조(공정거래, 광고 및 경쟁)

- ①임직원은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종류의 정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및 공정한 광고 관련 법률을 포함한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한다.
- ②제품 가격산정 또는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경쟁사들과의 공모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
제10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
- ①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-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1조(알선, 청탁 등의 금지)

-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, 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이해관계자를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2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
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,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13조(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
- ①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, 부동산,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- 2. 1인당 5만원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, 통신 등 편의
- 3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, 숙박 또는 음식물
- 4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
- 5.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- 6. 1인당 5만원 이내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
- 7.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, 격려, 포상 등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- 8. 상급자의 생일이나 전배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부서원들의 성의를 모은 가벼운 선물 등
- 9. 기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
- ②임직원은 이해관계인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③회사 공식행사 외 부서 회식 및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협찬 또는 선물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④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배우자 또는 직계 존,비속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금품 등 제공 금지)

- ①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이 공제되는 소액정치 자금의 기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②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,비속이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금지된 금품 등을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15조(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)

①임직원은 회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, 용역, 물품구매의 입찰, 계약 및 계약 이행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
제16조(투명한 정보관리)

①임직원은 업무기록 및 기타 업무관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,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위조 및 허위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올바른 근무태도 등

제17조(성희롱 및 유사행위 금지)

-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유발 시키는 성희롱 및 이를 포함한 모든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②임직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당하거나 목격하였을 시에는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8조(인터넷 활용 등)

- ①임직원은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의 목적으로 회사의 인터넷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1. 음란물 사이트 접속, 불건전한 채팅 및 도박 등에 사용
- 2. 증권 관련 매수, 매도 거래 행위
- 3. 허가 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및 도용, IP 사용권한의 무단양도 등 불법적 행위
- 4. 컴퓨터 바이러스 등의 유포 등 전산망의 정상적 운용의 방해 행위
- 5.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 행위
- ②임직원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료나 문서를 송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.

제19조(이해상충 행위 등)

- ①임직원은 업무수행 시 개인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.
- ②임직원은 고객 또는 회사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거나 이해상충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윤리규정책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장 건전한 회사풍토의 조성

제20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
①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(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에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)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고자 하는 임직원은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임직원은 변제능력을 벗어난 과다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1조(경조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제한 등)

- ①임직원은 이해관계자에게 경조사(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,비속의 결혼, 출산, 돌, 사망, 회갑 등을 말한다)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친족, 친목단체(동창회,동호회 등) 및 종교단체 회원에 대한 통지
- 2.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임직원에 대한 통지
- 3. 신문, 방송 등을 통한 통지
- 4. 친목단체, 종교단체의 회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통지
- ②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 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.
- 1. 이해당사자가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- 2. 직원 상호간 제공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
제22조(형사사건 기소 사실 등의 자진신고)

- ①임직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1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- 2.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

제6장 위반 시 조치

제23조(위반여부에 대한 상담)

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정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윤리규정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24조(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)

-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대표이사,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대표이사와 윤리규정책임자는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,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④윤리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25조(징계 등)

①대표이사는 이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징계절차는 "인사규정"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6조(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)

- ①제12조 또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경영지원팀에게 청구 할 수 있다.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, 부패,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 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 시 윤리규정책임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1. 멸실, 부패, 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 처분한다.
- 2. 멸실, 부패, 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.
- 3.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증한다.
- 4.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, 제공받은 자, 제공받은 금품, 제공일시, 처리경위 등을 기록관리 하고,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공자의 주소를 알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7장 보칙

제27조(교육)

①윤리규정책임자는 임직원의 신규채용 시 이 규정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직원에게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해 필요 시 수시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.

제28조(윤리규정책임자의 지정)

- ①회사 윤리규정책임자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.
- ②윤리규정책임자는 회사 임직원에 대한 이 규정의 교육,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- ③윤리규정책임자는 이 규정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윤리규정책임자는 상담내용을 서면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29조(준수여부 점검)

- ①윤리규정책임자는 임직원의 규정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윤리규정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임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정행위 신고서

신고자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이메일	
	주소		
피신고자 (신고대상)	성명	생년월일	
	전화번호	부서	
	주소		
신고취지 및 내용			
증거서류			
비고			

위와 같이 부정혐의자의 부정행위 등을 신고합니다.

20 . . .

위 신고자 (인 또는 서명)

자 율 신 고 서

신고자	성명		부서		
제공자	성명		생년월일		
	전화번호		회사		
신고내용	주소		부서		
	○ 수수일시 :				
	○ 수수금액(물품):				
	○ 수수경위 :				
비고					

위와 같이 자율신고 합니다.

20 . . .

위 신고자 (인 또는 서명)